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 산업통상자원부		배포일시	2020. 5. 11.(월) 총 7매(본문 3, 붙임 4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유진, 사무관 강나루, 주무관 안슬아 • ☎ (044) 201-4094, 3770	
	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	담 당 자	• 과장 유성우, 사무관 황채은 • ☎ (044) 203-5149	
	한국에너지공단	담 당 자	• 팀장 정현채, 팀장 장승찬, 팀장 김강원 • ☎ (02) 6362-2020, (055) 920-0371, 0691	
	한국토지주택공사	담 당 자	• 차장 김희영, 차장 이진국, 차장 정승호 • ☎ (031) 738-4965, (055) 922-3510, 6824	
	한국지역난방공사	담 당 자	• 팀장 김성범 • ☎ (031) 8018-6575	
	한국건설기술연구원	담 당 자	• 녹색건축센터장 유기형 • ☎ (031) 910-0347	
보 도 일 시		2020년 5월 12일(화) 조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월 11일(월) 16:00 이후 보도 가능		

국토부 · 산업부,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힘 모은다

- 업무협약을 통해 부처 간 제도·사업 연계 및 협력사업 발굴·지원
- <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T/F> 발족...지속적 협력체계 마련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5월 11일(월)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「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(MOU)」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 - 동 업무협약을 계기로, 국토부와 산업부는 양 부처 에너지성능향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2025년부터 민간부문에서도 제로에너지 건축물의무화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본격 준비에 나선다.
 -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17%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“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(건물부문 BAU 대비 32.7%)” 달성에 한층 가까워질 것이라 밝혔다.

□ 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산업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과 관련한 공동 운영제도와 더불어 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제도 및 사업을 검토 하고, 관련 개선사항과 협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.

○ 그간, 국토부와 산업부는 ‘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(17~)’, ‘건축 에너지 효율등급제도(10~)’ 등 관련 제도를 공동 운영해온 바, 이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신축 및 기축 건물의 에너지성능 관리기반을 확대한다.

○ 아울러, 각 부처가 운영 중인 ‘그린리모델링’, ‘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’, ‘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(EERS)*’와 같은 에너지효율화 투자 지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협력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.

* ‘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(EERS)’: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효율 향상에 따른 에너지절감 의무목표를 부여함으로써 효율향상 투자유도 및 에너지절감 성과 제고

□ 국토부와 산업부는 이 날 체결한 협약에 따라, 건물 에너지절감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<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T/F(이하 T/F)>를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구성·운영할 계획이다.

○ T/F에는 한국에너지공단,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지역난방공사,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“건축물 에너지 효율·성능 향상 목표” 실현을 위해 심층 논의 및 연구를 진행한다.

○ 필요 시 한국감정원 등을 자문단으로 위촉하여 관련 기관의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T/F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.

-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“20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된 시점에서, 이번 산업부와의 업무협약은 경제·혁신적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확대까지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”고 밝혔고,
-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에너지혁신정책관은 “산업부는 그동안 건축물에 적용되는 다양한 설비·자재에 대해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해왔는데, 이번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건물부문의 종합적 에너지 효율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언급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강나루 사무관(☎ 044-201-409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건축 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
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업무협약서

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(이하 “양 기관” 이라 한다)는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및 성능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노력한다.

제1조(기본방향) 양 기관은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향상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양 기관의 전문성과 정책을 존중하며 상호 협력한다.

제2조(협력업무)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상호 협력한다.

- 1) ‘건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’, ‘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’등 신축·기축 건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향상을 위한 공동운영제도 발전방안 모색
- 2) 신축·기축 건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 향상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
- 3) 기타 양 기관이 합의한 건물 에너지효율 관리 및 지원 방안 모색

제3조(협의체 구성·운영) ① 양 기관은 제2조의 협력을 위한 정책개발, 협력방안 검토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, 양 기관의 실무 인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및 기술적 지원을 위해 협의체에 양 기관의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.

제4조(협약의 효력) 본 협약서의 효력은 상호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상호 동의하에 업무협력의 종결 의사를 문서로서 통보하지 않는 한 협력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이 협약서는 당사자 간에 서명,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

2020년 05월 11일



건축정책관 김 상 문



에너지혁신정책관 김 정 일

3.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란 무엇인지?

-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중 건축주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,
 - 에너지소요량(효율등급 1** 이상)과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(BEMS 등)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,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률*에 따라 5개 등급으로 평가하는 인증제도임
 - ‘에너지자립률’이란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을 의미함

4.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(EERS)란 무엇인지?

- 에너지공급자(한전, 가스공사 등)가 에너지효율향상 투자를 통해 각 공급자의 에너지판매량 중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제도임
 - 에너지공급자가 수요자를 대상으로 보일러, 전동기 등을 고효율 기기로 개체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의무절감량을 달성하는 방식
 - 現 시범사업 단계('18~)이며, 본사업 도입을 위해 법제화 추진 중